

# 선거연수원 기간제근로자(행정사무보조직-연구지원인력) 채용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기간제근로자(행정사무보조직-연구지원인력)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계약기간	근무부서(근무지)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보조직-연구지원인력)	1명	'26. 7. 1. ~ 9. 11.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 선발예정인원 및 계약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됨.

※ 구체적 근무조건은 "6.근무조건" 등 참고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 응시자격

- 사회과학분야(정치학·행정학·법학 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최종면접일 기준 19세 이상(2007. 6. 18.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우대사항

- 사회과학분야(정치학·행정학·법학 등)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이상 보유자
- 공인어학시험(TOEIC, TEPS, TOEFL 등) 성적 우수자
  - ※ 해당 우대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학력증명서, 자격증, 성적증명서 등) 제출은 필수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소 등에서의 연구지원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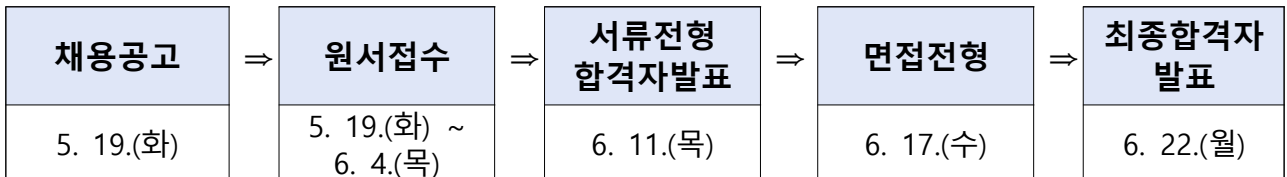
### □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

※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법정가점 미적용(법정가점은 응시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3. 채용 절차



### □ 서류전형 방법

계	평가점수			가점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전문성	
100점 + 가점	30	40	30	최대 3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적극적 서류전형,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 면접전형 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개별면접: 자기소개서, 업무 관련 과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15~20분)
-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계량화하여 평가
  - \* 1.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세 및 태도, 3.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 품행 및 성실성, 5.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비 고
1명	3명 이내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 시 ①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②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선정
-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 4. 전형 일정

구분	일정	비고
채용공고 기간	'26. 5. 19.(화) ~ 6. 4.(목)	
원서접수 기간	'26. 5. 19.(화) 공고 시 ~ 6. 4.(목) 18:00	E-mail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26. 6. 10.(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6. 6. 11.(목)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면접전형 안내 포함)
면접전형	'26. 6. 17.(수)	
최종합격자 발표일	'26. 6. 22.(월)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최종 제출서류 안내 포함)
채용 예정일	"1. 채용개요"에 따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 개시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된 일정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6. 5. 19.(화) 공고 시 ~ '26. 6. 4.(목) 18:00

○ 원서 접수 방법: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신분증 사본,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가점대상 증빙서류와 함께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서명을 누락하거나 PDF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 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등기우편 접수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16429  
(전자우편 접수주소) immummy@nec.go.kr

○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p>① 응시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b>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b></p> <p>④ 응시자격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p> <p>⑤ 우대사항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 <b>채용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한하여 인정</b></p> <p>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 <b>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b></p> <p>⑦ 가점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li> <li>■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li> <li>■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li> <li>■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li> <li>■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관계증명서</li> <li>·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li> <li>·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li> <li>·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li> </ul> </li> </ul> </div> <p>※ <b>우대 및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불인정</b></p>
최종합격자 발표 후	<p>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채용예정자), ②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③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 구체적인 채용예정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p>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면접 심사위원에게 일절 미제공

## 6. 근무 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sup>1)</sup>	근무시간	보수 <sup>2)</sup>	주요업무
기간제근로자 (행정사무보조직- 연구지원인력)	'26. 7. 1. ~ 9. 11.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 상황에 따라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1일당 107,750원 * 식비 포함 *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 국내외 선거·정당·정치제도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 · 외국 정치관계법규 번역·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등 · 기타 사무실 업무 지원

- 1)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종료되거나 기관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7. 유의 사항

###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4) 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 채용비리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3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부모직업, 가족 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 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 [26. 6. 4.(목) 18시] 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면접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사항은 아래의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채용절차	기획운영부	031-210-1521
담당업무 및 근로조건 등	선거연구부	031-210-4912

-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해당시). 끝.







(붙임 4)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필요시, 전자우편 제출시 미해당)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선거연수원 귀중

###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